

# 본회 9월부터 농장검정 시행키로

8월 2일 검정위에서 세부시행요령 확정!

9월 1일부터 검정소에서 신청서 접수!

본회는 정부가 종축검정방법(농수산부 고시 제 8559호(85. 11. 18))을 고시함에 따라 9월 1일부터 종돈의 농장검정제도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본회는 우선 금년중에 5개 내외의 종돈장을 선정하여 농장검정을 시행한후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농장검정을 희망하는 종돈장은 9월 1일부터 본회 공인 종돈능력검정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농장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농장은 종축업등록이 되어 있는 종돈장으로서 본회에서 실시한 검정전문요원 교육을 수료한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농장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본회는 또 신청서가 접수되는대로 검정소 직원을 현지 조사케 하여 시설, 방역상태등을 확인한 후 검정위원회를 열어 대상농장을 선정할 방침이다.

본회는 대상농장이 선정되면 검정소에 본회 고유의 이표를 부착한 후 검정개시와 종료시 검정소 직원의 입회하에 각종 조사항목을 측정하여 농장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때 검정돈에는 협회 고유의 이표가 부여된다.

이밖에 본회는 농장검정을 한 농장에 대해서는 검정성적증명서를 발급해 줄 예정이며 그 성적을 월간양돈등 축산관계 간행물에 게재하여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본회가 농장검정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검정소 검정과 병행해 일반농장에서도 자체 농장검정을 시행케 함으로써 종돈의 개량속도를 증진하고, 이로써 양돈농가의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을 향상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장검정시의 등록비는 60두 기준 50만원이며 1두 초과당 2,000원씩 검정비를 더 납부해야 한다.

한편 검정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농장검정 실시에 따른 세부 시행요령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1. 희망농장의 검정시설 규모 - 10돈방 이상의 별도 또는 분리된 검정돈방 및 검정에 필요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2. 검정소 출품 두수

▷ 농장검정 200두까지 : 20두 이상

▷ 600두까지 : 40두 이상

▷ 1,000두까지 : 60두 이상

▷ 1,000두 이상 : 70두 이상 출품하여 종돈의 능력을 비교 공인받아야 한다.

3. 검정 개시 및 종료

검정돈은 20~30kg에 검정을 개시하여 75~105kg에 종료한다.

4. 검정돈사 규격 및 수용두수

가. 검정돈방의 크기는 수퇘지 1두당 0.5~0.7평, 암퇘지 1두당 0.4~0.6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검정돈은 1돈방에 수퇘지 등복 2~3두, 암퇘지 4~8두를 수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검정돈의 사료는 검정사료를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검정사료를 급여할 수 없는 농장은

검정사료의 성분에 준하는 한가지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다음은 농장검정 시행에 따른 세부 규정이다.

## ●—농장 검정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종돈의 능력을 측정하여 선발·이용함으로써 양돈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검정기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에 종돈능력검정 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검정장소) 이 검정은 농장 검정을 등록한 농장에서 실시한다.

제 4 조 (등록) 농장검정을 하자 하는 종돈장은 일정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대한양돈협회 공인 종돈능력검정소에 등록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검정요건) 농장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돈군의 모든 종돈은 이각, 이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개체 표시하고 검정자격을 득하기 위해서는 혈통등록하여야 한다.

2. 소정의 서식에 의해 축군에 대한 번식 및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제 6 조 (의무) 등록된 종돈장은 농장 검정두수의 10% 이상을 종돈능력검정소에 출품하여 종돈의 능력을 공인 받아야 하고, 검정업무에 수반되는 소정의 검정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2 장 검정 방법

#### 제 7 조 (실시요령)

1. 품종: 버크샤, 랜드레이스, 요오크샤, 듀

록, 햄프샤등

2. 검정돈의 조건: 검정대상 종돈은 아래 조건을 필히 구비하여야 한다.

가. 본 등록(혈통등록)이 된 종모돈 및 종빈돈에서 생산된 자돈

나. 산자수가 랜드레이스·요오크샤종은 9두이상, 버크샤·햄프샤·듀록종 및 기타는 8두이상

다. 정상적인 젖꼭지가 6쌍이상

라. 유전적인 불량형질이 없는 한배 새끼 중에서 선발된 자돈

마. 최근 3개월간 돈단독, 돈콜레라 등의 전염병 발생이 없는 양돈장에서 사육되고 돈단독, 돈콜레라 예방접종을 필한 자돈

3. 조사항목: 종돈이 75~105kg에 도달하였을 때 체중, 등지방두께 및 종돈의 적격성을 조사하여 체중 90kg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한다.

가. 90kg 도달일령

\* 보정된 90kg 도달일령 = 측정시 일령 + (90kg - 측정체중) × (측정시 일령 - 38) ÷ 측정체중

나. 등지방두께: 초음파 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측정부위는 어깨(제 4늑골) 등(최후늑골) 엉덩이(최후척추) 3부분을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이용한다.

\* 보정된 등지방두께 = 측정시 등지방두께 + (90kg - 측정체중) × 측정시 등지방두께 ÷ (측정

체중-11.34)

다. 종돈의 적격성: 일반체형, 사지상태, 번식능력, 생식기발육, 성욕상태등을 끼지 외모 심사기준(농수산부고시제 2661호)에 의해 적격성을 심사한다.

#### 4. 검정 성적의 판정기준

검정성적의 판정은 90kg도달일령, 등지방두께의 성적을 아래 선발지수식에 적용하여 결정한다.

\* 선발지수=  $100 - 17.68 \times (\text{90kg도달일령} - \text{돈군의 평균 } 90\text{kg도달일령}) \div \text{돈군의 } 90\text{kg 도달일령 표준편차} - 17.68$  (등지방두께 - 돈군의 평균등지

방두께)  $\div$  돈군의 등지방두께 표준편차

#### 제 8조 (성적의 기록 및 이용)

종돈 검정성적은 검정소에서 전산처리하여 기록 유지하고, 그 결과를 종돈업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제 9조 (성적 공포 및 등록증 교부)

검정 성적은 연 1회 공시하며, 번식돈으로 활용할 종돈은 본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검정요원은 198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 알

## 림 ■

### 경남동부양돈협회는 본회와 전혀 무관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68-3에 소재한 경남동부양돈협회(회장: 강 우덕)가 본회 산하 지부 조직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본회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농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단체로 공식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입니다.

2. 본회는 양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양돈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로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3.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산하에는 9개 도협의회와 58개 시·군지부가 조직되어 있으며 도협의회의 공식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도협의회」이고, 지부의 공식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지부」입니다.

4. 따라서 「경남동부양돈협회」와 같은 단체는 본회와 전혀 무관한 사조직임을 알려드리으며, 아울러 상기 조직이 경제사업으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킬 시 그와 관계된 행위는 본회와 전혀 무관함을 밝혀드립니다.

1986. 8. 31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회장 전 동용